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우리저축은행

2. 조치일 : 2024. 2. 5.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제외 검토 체계 개선

저축은행중앙회가 제공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88개)에 따라 비정상적인 거래로 추출된 거래를 검토하고, 그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보고제외 사유를 기재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일부 추출기준은 경보가 발생하지 않거나 보고된 사례가 없으며, 특정 기준에서 경보가 편중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회사의 실정과 맞지 않는 추출기준이 운영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고

보고제외 사유에 비정상적인 거래의 유형, 해당 거래의 배경 및 목적 등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추출된 사유와 관련 없는 단순 거래사실 위주로 기재하는 등 형식적으로 기재한 사례가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선·보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추출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검토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보고제외 검토 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제외 검토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길 바람

< 관련규정 >
1.「저축은행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표준」제27조
2.「저축은행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제50조

(2) 고객확인업무 운영체계 개선

내규 「저축은행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표준」 등에 의하면 고객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하고, 동 정보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에 고객확인 수행내역과 증빙자료들을 기록·보관하여야 함에도

개인고객 중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 고객거래 확인서 등을 통해 직업 또는 업종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하였음에도 시스템에 오입력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고객에 대해서 주주명부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였음에도 시스템에 이를 미입력한 사례가 있으므로

고객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로 확인된 사항을 시스템에 오입력 혹은 미입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직원 및 업무 담당자에게 동 내용을 교육하고 고객 확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고객확인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시길 바람

< 관련규정 >
1.「저축은행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표준」제19조, 제20조
2.「저축은행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제28조, 제31조